< 정 오 표 (1)>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4.02.21

3. 주요 정정사항 :

- S클래스(펀드온라인코리아 판매 전용 클래스) 신설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 기타 자구 정정 등

[규 약]

ात ४।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조(투자신탁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
의 명칭 및 종	는 다음 각호와 같다.	는 다음 각호와 같다.
류)	1~2. (생략)	1~2.(현행과 동일)
	3. <신설>	3. Class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
		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제10조(수익증권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 발행 및 예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
탁)	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	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
	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	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
	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2. (생략)	1~2.(현행과 동일)
	3. <신설>	3. <u>Class S 수익증권</u>
제17조(투자대상	1. (생략)	1.(현행과 동일)
자산 등)	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2. <u>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u>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22조(신탁업자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의 업무제한 등)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
	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u><신설></u>	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u>다만, 해당 증권의</u>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
		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37조(수익자총

회)

①~⑤ (생략)

- ⑥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 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 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 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
- ⑦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 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 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 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 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 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 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 다.

- ①~⑤ (현행과 동일)
- 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 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 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
- ⑦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 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 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 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 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 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 차를 따를 것
- 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 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 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 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

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 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 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 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⑩ (생략) ① (현행과 동일) 제38조(반대수익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 매수청구 자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 권) 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 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 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 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 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 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동일) 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제39조(보수) 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 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 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신설> 3. Class 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u>보수율 : 연 1000분의 4.33</u> <u>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u> 1000분의 3.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제40조(판매수수 1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동일) 료) ③ <신설> ③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기로 수익증권을 한대하는 시점에 수약자로 부터 추위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간에 대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아익분배금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② 제3항의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3항의 후취판매수수료를 현재하는 논의 전략			
1. Class S 수익증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 액의 100분의 0.15 이내 영기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4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수있다. 제41조(환매수수 료)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 (자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 (자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소익은 제외한다, 이하는 항에서'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임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임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임이에는 이 전에는 이 경우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전에는 이 전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제결하여 이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전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제결하여 이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전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제결하여 이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데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의 걸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신설>	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 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는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료)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 하 본 항에서'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Class C 수익증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Class A: 없음 ③ (생략) 3 (현행과 동일) 제43조(신탁계약 의 변경) 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신설>	1. Class S 수익증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 액의 100분의 0.15 이내 ⑤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4항 각 호 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제43조(신탁계약) 의 변경)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 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 하 본 항에서'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 응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Class C, Class S 수익증권: 90일 미만: 이 	제41조(환매수수	① (생략)	① (현행과 동일)
하 본 항에서'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 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Class C 수익증권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Class A : 없음 3 (생략) 제43조(신탁계약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나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료)		
응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Class C 수익증권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Class A : 없음 ③ (생략) 제43조(신탁계약 이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는 이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Class C 수익증권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Class A : 없음 ③ (생략)			
③ (생략) ③ (현행과 동일) 제43조(신탁계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 인 지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든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탁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든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70%	익금의 70%
제43조(신탁계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		·· ·	<u>-</u>
의 변경) 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의 면경) 		
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			
		<신설>	
<u>있는 경우는 제외한다)</u>			<u>있는 경우는 제외한다)</u>
4. (생략) 4. (현행과 동일)		4. (생략)	4. (현행과 동일)
제47조(투자신탁 ① (생략) ① (현행과 동일)			
의 합병)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의 합병)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호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 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		의 사망들 기새안 압명계획서들 작성하여 합	의 사망을 기새안 압명계획서들 삭성하여 합

	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 거쳐야 한다. <u><신설></u> │	거쳐야 한다. <u>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u>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
		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
		<u>외한다.</u>
제50조(공시 및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동일)
보고서 등)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따라 수익증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따라 수익증
	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증권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u>간이투자</u>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	<u>설명서</u>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
	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	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u>및 간</u>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시행규칙	<u>이투자설명서</u> 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라 금융
	제13조제1항 각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동일)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
	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
		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생략)	'C G ' 2. (현행과 동일)
	* (^ (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른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모	법 제248조에 따른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모
		탑 제250도에 떠는 자근도는 근디도도자 (도 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
	구시한국의 대응을 포함/을 국용하여 구극시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구시한국의 대응을 포함/을 극성에서 구극시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
	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⑦~⑪ (생략)	⑦~⑪ (현행과 동일)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투자설명서 또</u>
안내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는 간이투자설명서를</u>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2. (생략)	2.(현행과 동일)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u>또는 간이투자설</u>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	<u>명서상</u>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
		4.~8. (생략)	4.~8.(현행과 동일)
		9.<신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
			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

		그에티티 시스럽그에서 된이 지 아시나라
		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2부. 5. 운용전문인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력		<u>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팀이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	퀀트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
	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	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
	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니다.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
		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
		자목적 및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주3) (생략)	주2) 주3)(현행과 동일)
제2부. 6. 집합투자기	나. 종류형 구조	나. 종류형 구조
구의 구조	<신설>	- S클래스 가입자격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
		<u>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u>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
		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
		<u>과되는 수익증권</u>
		- <u>S클래스 수수료 및 보수</u>
		· <u>후취 판매수수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u>
		<u>액의 0.15% 이내</u>
		· <u>환매수수료: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u>
		70%
		· 보수: 운용(0.433), 판매(0.3), 신탁(0.03),
		사무관리(0.015)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구의 투자대상	- 주식 구식	- 주식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
	이 말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	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
	의 주권상장법인 중 <u>법 제9조제13항의</u> 유가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것 및 <u>법 제9조제13항의</u> 유가증권시장에 기	것 및 <u>법 제8조의2제4항의</u> 유가증권시장에
	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 다.) 단,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니,) 전, 집 제150호에 되어서 구시외시기 발행한 주식을 제외합니다.	니.) 전, 집 제190호에 되어서 구시되시기 발행한 주식을 제외합니다.
	글행인 구역을 세되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	
	다닌, 국내에서 글랑되어 국내에서 기내되 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는 영영구역에의 구시는 구시전력 시전증역 의 60% 이상	는 영영구역에의 구시는 구시선력 시선증력 의 60% 이상
	00/0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
		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
	ㄷ ㅜ시시ㅜ군놀, ㅜ시시ㅜ답인, ㅜ꼭인물,	O MM 기네되군 구기자구인할, 구기자구급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 증권의 대여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대여는 투자 신탁이 보유하는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 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차입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 고유재산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의 투자비율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 라)(생략)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 등 으로 (1)~(5)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2) 동일종목 투자

채증권...(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u>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u>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u> 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 지 투자하는 행위

ㅇ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 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u>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u> <u>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u> 매일의 그 지분증 시가총액비중은 <u>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u>

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 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 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 고유재산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4)의 투자비율 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 라) (생략)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 등 으로 (1)~(4)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2) 동일종목 투자

ㅇ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 ┃ㅇ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 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 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 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및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ㅇ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 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 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 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 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10)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 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 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 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 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 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10)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 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 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 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서 제19조 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2부. 11. 매입, 환매, 기. 매입 전환절차 및 기준가 (1) 매입방법 격 적용기준

- (생략)
- <삭제>
- 나. 환매
- (1) 수익증권의 환매
- (생략)
- <삭제>

- 가. 매입
- (1) 매입방법
- (현행과 동일)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 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나. 환매
- (1) 수익증권의 환매
- (현행과 동일)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 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 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 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생략)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현행과 동일)

	<신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수
	 (이하 생략)	있습니다.(이하 현행과 동일)
제2부. 12. 기준가격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산정기준 및 집합투	(생략)	(현행과 동일)
자재산의 평가	- (주2) 모투자신탁의 경우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가 없으므로 자투자신탁과 기준가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모투자신탁에서 경상적・
		<u>반</u> 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기타비용등이
		자투자신탁에 비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생략)	(현행과 동일)
	<신설>	주1) 상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모투
		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2부. 13. 보수 및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에 관한 사항		<u>Class S 신설</u>
		<u>주1) 후취판매수수료는 Class S 수익증권에</u>
		한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부과되
		<u>며 상기의 후취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u>
		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
		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
		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
		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
		<u>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u>
		<u>다.</u>
		주2) 집합투자규약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
		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
		며 집합투자규약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
		<u>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u>
		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
		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Class S 신설
		기타비용 등 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주1)~주3) (생략)	ス1) ス2)/もは7 こ こ 0)
		주1)~주3) (현행과 동일)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
	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	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

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 야 하는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 생할 수 있습니다. 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집 합투자업자가 부담)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주5)~주6) (생략) 주5)~주6) (현행과 동일) 주7) 투자신탁관련 비용 : 증권 등의 매매수 주7) 투자신탁관련 기타비용 : 증권 등의 매 수료,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투자신 매수수료,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투 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수익자명부 관리비 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수익자명부 관 용,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투자신탁재산에 리비용,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투자신탁재 관한 소송비용,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 산에 관한 소송비용, 증권 등 자산의 가격 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 정보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산권비용,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 지적재산권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 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 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2부. 13. 보수 및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 수수료에 관한 사항 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 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의 투자기간별 예 시(누적)] 시(누적)] 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u>Class S 신설</u> 제2부. 14. 이익 배분 가. 이익 배분 가.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 니다. 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이하 생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신 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나. 과세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 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 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 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 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 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제2년 지하트되기그		치그경사이 미 자서이 기즈으크 어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		<u>최근결산일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제4부. 1. 집합투자업	라. 운용자산규모 	
자에 관한 사항	. 11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u>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제4부. 6. 채권평가회	<사명변경>	<사명변경>
사에 관한 사항	나이스채권평가 (www.nicepricing.co.kr)	NICE피앤아이 (www.nicepni.com)
제5부. 1. 수익자의 권	② 의결권 행사방법	② 의결권 행사방법
리에 관한 사항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2) 수익자총회의 소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집 및 의결권 행사방	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
법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	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
	<u>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 다만, 법령에서	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규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u>5분의 1 이상</u> 의 수로
	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결의할 수 있습니다.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u>4분의 1 이상</u>	
	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
	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	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	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u>
	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	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
		(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
		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u>아니하였을 것</u>
		• <u>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u>
		<u>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
		<u>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u>
		<u>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u>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u>
	- (생략)	- (현행과 동일)
제5부. 1. 수익자의 권	③ 연기수익자총회	③ 연기수익자총회
리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u>	-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u>
(2) 수익자총회의 소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
집 및 의결권 행사방	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	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
법	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	
	<u> 의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u> 그	
L		1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	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
	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
	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	수 있습니다.
	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	1 2 1 1 1
	의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	
	의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수로 결의할 수	
	러시의 의물전의 괴한구의 구도 물의물 구 있습니다.	
제5부. 1. 수익자의 권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세3구: 1: 무극시크 년 리에 관한 사항	(3) ㅜㄱ싱되 르기싱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	(3) ㅜㄱ시ㅇ되 르기시ㅎ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에 의하여야 합니다.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
		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 · · · · · · · · · · · · · · · · ·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
		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
		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생략)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
		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하는 각 투자신
		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건전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
		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
		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현행과 동일)
제5부. 1. 수익자의 권	(4) 반대매수청구권	(4) 반대매수청구권
리에 관한 사항	- <u>법 제188조제2항</u>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따른 집합투자규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	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
	<u> </u>	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u>있습니다.</u>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L		<u> </u>

	T	T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
	수 있습니다.	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
		<u>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u>
		<u>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u>
		<u>경우</u>
제5부. 1. 수익자의 권	- (생략)	- (현행과 동일)
리에 관한 사항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
라. 손해배상책임	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
	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	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
	· · · · · · · · · · · · · · · · · · ·	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
		러 미국자가 근해를 답는 중투해는 다음 하 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
	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
	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그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인수계</u>	·그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u>
	<u>약을 체결한 자</u> 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	<u>는 주선인이</u>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
	인)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	
	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제5브 1 스이자이 긔		- (현행과 동일)
제5부.1. 수익자의 권	-(생략) - 	(
리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 이 투자신탁의 <u>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u>
바. 기타 투자자의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	
	나, 한국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
항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제5부. 3. 집합투자기	① 영업보고서	① 영업보고서
구의 공시에 관한 사	- (생략)	- (현행과 동일)
항	- <u>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u>	- <u>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u>
가. 정기보고서	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	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	<u> </u>
	료	
	<u> ''' </u>	<u>l</u>

제5부. 3. 집합투자기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
구의 공시에 관한 사	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	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
항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
	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u>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으로 표시한 경우
	- (생략)	- (현행과 동일)
제5부. 3. 집합투자기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구의 공시에 관한 사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항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u>공시해야 합니다.</u>
나. 수시공시	<u>구체적인 행사내용</u>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주요의
(3) 집합투자재산의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 행사에 관한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
공시	<u>용</u>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
	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	<u>용 및 그 사유</u>
	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신설>	②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u>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u>
		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간이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 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생략)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현행과 동일)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u>또는 간이투자</u> 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8. (생략) 9.<신설>	4.~8. (현행과 동일)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 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1부. 5. 투자운용인 력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퀀트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

	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	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
	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니다.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
		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
		자목적 및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
		<u>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u>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주3) (생략)	- 주2) 주3)(현행과 동일)
제1부. 6. 투자실적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추이(연도별 수익률)		
제2부. 1. 보수 및 수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수료		기타비용 등 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Class S 신설
	주1)~주3) (생략)	주1)~주3)(현행과 동일)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	^-/
	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	
	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	
		야 하는 발행분담금(<u>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u>
	생할 수 있습니다.	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u>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집</u>
		<u>합투자업자가 부담)</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주5)~주6) (생략)	주5)~주6) (현행과 동일)
	주7) 투자신탁관련 비용 : 증권 등의 매매수	주7) 투자신탁관련 기타비용 : 증권 등의 매
	수료,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투자신	매수수료,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투
	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수익자명부 관리비	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수익자명부 관
	용,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투자신탁재산에	리비용,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투자신탁재
	관한 소송비용,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	산에 관한 소송비용, 증권 등 자산의 가격
	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	정보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산권비용,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	지적재산권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	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
	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용
제2부 1 보수 및 스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	으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
세2구: 1: 모두 ᆾ 두 수료	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	
1	시(누적)]	는 구구표 및 포구·미승기 구시기단을 예 시(누적)]
	ハイ・	
		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Class S. A.M.
TII 2 H . O OLT II T. I		Class S 신설
제3부. 요약재무정보		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u>I</u>		1

< 정 오 표 (2)>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인덱스200증권자투자회사[주식-파생형]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4.02.21

3. 주요 정정사항 :

- S클래스(펀드온라인코리아 판매 전용 클래스) 신설
- 투자회사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 기타 자구 정정 등

[규 약]

[뉴 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9조(주식의	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판매 기준 및 판	라 종류별로 주식을 판매한다.	라 종류별로 주식을 판매한다.
매수수료)	1~3. (생략)	1~3.(현행과 동일)
	4. <신설>	4. Class S 주식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
		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
		<u>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u>
		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
		료가 부과되는 주식
	② 판매회사는 주식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	② 판매회사는 주식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
	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주주로부터 판매	로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에 주주로부터 선취
	수수료를 취득한다.	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1. Class A 주식 : 주식을 환매하는 시점에 취	③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주식 매수시 적
	득하되 환매금액(주식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	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주식수를 곱한
	격에 환매하는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종류 주식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
	을 후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한다. 단, 환매되는	로 한다.
	주식의 보유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판	1. Class B 주식 : 판매회사에 납입한 납입금액
	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의 100분의 1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90일 미만인 주식에 대	④ 판매회사는 주식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
	하여도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로 주식을 환매하는 시점에 주주로부터 후취
	가. 90일 이상의 저축기간을 정하여 금융투자	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의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이 정하	<u>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주식의</u>
	는 목적식저축의 방법으로 매입한 주식을 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투자협
	축기간이 종료한 후 환매하는 경우	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나. 90일 이상의 저축기간을 정하여 금융투자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이 정하	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는 목표식저축의 방법으로 매입한 주식을 저	⑤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주식
	축기간이 종료한 후 저축목표금액에 도달하여	환매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주식
	환매하는 경우	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주

	2 이 및 조사 , 조사의 메스워트 시험에 된	나오 보이한 기기/단세 조사이 메스이오 기사
	2. Class B 주식 :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에 취	식을 보유한 기간(당해 주식의 매수일을 기산
	특하되 납입금액(주식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	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주식의 기
	격에 매수하는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	<u>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u>
	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의 종류 주식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
	을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한다.	<u>액으로 한다.</u>
	3 . Class I 주식 : 판매수수료 없음	1. Class A 주식 : 90일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
		의 100분의 0.5
		2. Class S 주식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u>100분의 0.15 이내</u>
		⑥ 제5항제2호의 후취판매수수료는 제5항제2
		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주주총회	① (생략)	 ① (현행과 동일)
의 운영)	© (0) ② 주주총회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를	②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
	보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의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
	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한다. 다만 상법 제	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
	434조의 결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	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
	<u>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u>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
1124조/니데이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u>의할 수 있다.</u>
제34조(서면에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
의한 의결권행	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u>다만,</u>
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
		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
		<u> 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 간주의결권행사"</u>
		<u>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u>
		1. 주주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정관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
		<u>스, 전자우편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u>
		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u>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u>있을 것</u>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총수가
		<u>발행된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 보호와 주주총회 결의
		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
		<u>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u>
		라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제36조(주주총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① 32조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
의 연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의 주식총	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이내에 연
	수가 발행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기된 주주총회 (이하 "연기주주총회"라 한다)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연기된	1주전까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경우 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 주주	연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이하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주주총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의 주식총 수가 발행된 주식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 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 에 관하여 제32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출 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의 4분의 1이상"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 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 상"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으로 한다.

② 연기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2조제 2항 및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 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 발행주식총 수의 8분의 1 이상" 으로 보고, " 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 주식총수의 10분의 1 이 상"으로 본다.

제37조(반대주주 의 주식매수청구 권)

① 제67조에서 정하는 정관의 변경 또는 제72 🛮 ①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조에서 정하는 회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의 의결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 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 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결 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 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 구할 수 있다.

- 는 경우 회사에게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 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 <u>할</u>수 있다.
- 1. 법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법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 는 주주가 법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

자산 등)

- 제51조(투자대상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 상장법인 중 법 제9조제13항2호의 코스닥시장 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단,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 5. 법 제9조제14항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 되는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주가지 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이하 "주식관련장내파 생상품"이라 한다)
 - 고유재산과의 거래
 - 8. 회사 재산으로 보유하는 수익증권 등을 제 외한 증권의 대여
 - 10.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차입
 - 고유재산과의 거래

-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 상장법인 중 법 제8조의2제4항의 증권시장 내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 주에 한한다). 단,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주식"이 라 하다)
- 5.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 수옵션,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이하 "주 식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 6.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6.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8. 회사 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 10. 증권의 차입
- 13.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 13.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52조(투자한 도)

8.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대여는 회사가 보유하는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u>증권의 대여는 회사가 보유하는 증권총액의</u> 50%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u>제5호</u>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 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생략) ② 제1항제1호 내지 <u>제4호</u>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 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동일)

4. 회사 자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이 조 제1항제1호 내지 <u>제5호</u>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 는 경우 4. 회사 자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이 조 제1항제1호 내지 <u>제4호</u>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 는 경우

제53조(자산운용 및 투자제한)

나.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탁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일의 그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는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나.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②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 동, 일부 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2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이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 동, 일부 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2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 이 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제67조(정관의 변경)

① 본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 에 의하여야 한다.

① 본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3. 회사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3. <u>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u> 유를 정한 경우 회사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

		의 변경
	4 (AH 2E)	
	│4.(생략) │ ○ 제1하이 그전에 이희 전과이 변경은 이희	4.(현행과 동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을 위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의결은 출석 또는 서면 제출 주주	주주총회의 의결은 <u>제32조제2항본문에 따른</u>
	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u>결의를 거쳐야 한다.</u>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의결한다.	
-11.50 (-1.11.0.0	③~⑤ (생략)	③~⑤ (현행과 동일)
제68조(자산운용	①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설립일부터 매 3월마	①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설립일부터 매 3월마
보고서 등의 제	다 또는 존립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보고서	다 또는 존립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보고서
공)	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주에	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주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주주가 수시	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주주가 수시
	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1.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의사표시를 <u>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u>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
		한 경우
	2.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2.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 신탁업자는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② 신탁업자는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
	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로서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③ (현행과 동일)
제72조(합병)	① 회사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	① 회사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
# (B 0)	회의 의결로 법인이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	회의 의결(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
	최기 기술도 합년에서가 반응하는 기는 가서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러크 크로 <u>(카르, 트로는 취례 본)이를 해볼 </u> 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관련법
	4714	<u>더기 국단 소마소 무시되시기 답증 중 단단법</u> 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법인이사가
		응으로 당하는 당부는 세되인데/도 답인하시기 문용하는 다른 투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A) - (A) (사리)	
	②~⑦ (생략)	②~⑦ (현행과 동일)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투자설명서 또</u>
안내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는 간이투자설명서를</u>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2. (생략)	2. (현행과 동일)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u>또는 간이투자설</u>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	<u>명서상</u>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
		4.~8. (생략)	4.~8.(현행과 동일)

	9.<신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
		<u> </u>
		<u>국에서 구기단에 무표가 서급되므로 단데</u> 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TI2H F 00HD0	기 이유권묘이러	
제2부. 5. 운용전문인	기.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력 		<u>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주1) 이 투자회사의 운용은 퀀트운용팀이	주1) 이 투자회사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	퀀트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
	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	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
	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니다.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
		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
		자목적 및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주3) (생략)	주2) 주3) (현행과 동일)
제2부. 6. 집합투자기	나. 종류형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지르다. 0. 합합무지기 구의 구조	기· 이파이 조 <신설>	
T4 T2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
		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u>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u>
		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
		<u> 과되는 주식</u>
		- S클래스 수수료 및 보수
		· <u>후취 판매수수료</u>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
		<u>액의 0.15% 이내</u>
		· <u>환매수수료: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u>
		<u>30%</u>
		· 보수: 운용(0.5), 판매(0.3), 신탁(0.03), 사
		무관리(0.025)
제2부. 8. 집합투자기	- 주식	- 주식
구의 투자대상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
	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	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9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8
	조제13항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조의2제4항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
	<u>소세요8의</u> 8년시8에 기업8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u> </u>
	-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법 제9조제14항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	
	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선, 주식선물, 주식옵션
	- 증권의 대여	- 증권의 대여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대여는 투자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신탁이 보유하는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	
	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차입	- 증권차입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 고유재산거래

법시행령 제268조<u>제3항</u>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의 투자비율 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 다) (생략)

라)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 등 으로 (1)~(5)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2) 동일종목 투자

ㅇ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 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 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 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 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 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10) 투자한도 초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일부 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6)~(10), 상기 (2)~(5)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 고유재산거래

법시행령 제268조<u>제4항</u>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4)의 투자비율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 다) (생략)

라)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 등 으로 (1)~(4)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2) 동일종목 투자

ㅇ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 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 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 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10) 투자한도 초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 동, 일부 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가. 투자대상의 (5)~(10), 나. 투자제 한의 (2)~(4)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 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 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Class S 신설

<u>주1)</u> 후취판매수수료는 Class S 주식에 한하 여 주식을 환매하는 시점에 부과되며 상기 의 후취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별

	T	
		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주2) 정관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주식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Class S 신설 기타비용 등 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주1)~주3)(생략)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 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 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주1)~주3) (현행과 동일)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 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 야 하는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 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집 합투자업자가 부담)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주5)~주7) (생략)	주5)~주7)(현행과 동일)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최근결산일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등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	- - 라. 운용자산규모	
자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4부. 6. 채권평가회	<사명변경>	<사명변경>
사에 관한 사항	나이스채권평가 (www.nicepricing.co.kr)	NICE피앤아이 (www.nicepni.com)
제5부. 1. 주주의 권리	② 의결권 행사방법	② 의결권 행사방법
에 관한 사항	- <u>주주총회는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u>	- <u>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u>
(2) 주주총회의 소집	소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및 의결권 행사방법	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u>결의합니다.</u> 다만, 법령에서 정한 주주총회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주주총회
	<u>합니다.</u>	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 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 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투자회사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 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 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주주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 라 정관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 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 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 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 어 있을 것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총 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일
- •그 밖에 주주의 이익 보호와 주주총회 결 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 (현행과 동일)
- ③ 연기주주총회
- <삭제>

- (생략)

- ③ 연기주주총회
- 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 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 가 소유한 주식의 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가 연기된 경우 투자회사는 그 <u>정관 제 32조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u>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연기주주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주 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 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총 주식의 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 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 (이하 "연기주주총 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주주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 | 연기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정관 제 32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주식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제5부. 1. 주주의 권리 에 관한 사항

(3) 주주총회 결의사항

(3) 주주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의하여야 합니다.
		-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
	171343 E3716	사유를 정하는 경우 투자회사 존속기간의
	0	변경
	 - (생략)	<u> </u>
제[법 1 조조이 긔긔		
제5부. 1. 주주의 권리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에 관한 사항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u>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경우 회사에게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해	구할 수 있습니다.
	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 법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주주총 	경 또는 법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권의 수를	<u>반대하는 주주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u>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의 매수를 청
	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u> 구하는 경우</u>
제5부. 1. 주주의 권리	☞ (생략), <u>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u>	☞ (현행과 동일), <u>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u>
에 관한 사항	<u>자</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라. 손해배상책임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u>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u>
		<u>하는 인수인)</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
		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
		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
제5부. 1. 주주의 권리	- (생략)	- (현행과 동일)
에 관한 사항	- 이 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 이 투자회사의 <u>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u>
바. 기타 주주의 권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	<u>서 포함)</u>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
리보호에 관한 사항	나, 한국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제5부. 3. 집합투자기	① 영업보고서	① 영업보고서
구의 공시에 관한 사	- (생략)	- (현행과 동일)
항	- <u>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u>	- <u>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u>
가. 정기보고서	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	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	<u>서류</u>
	<u> </u>	
제5부. 3. 집합투자기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
구의 공시에 관한 사	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주주에게 교부하	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주주에게 교부하
항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	-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
	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u>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으로 표시한 경우
	- (생략)	- (현행과 동일)
제5부. 3. 집합투자기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구의 공시에 관한 사		
항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해야 합니다.

(3) 집합투자재산의 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 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 <u>구체적인 행사내용</u> 공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 │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 용 용 및 그 사유 - (생략) - (현행과 같음) ② <신설> ② <u>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u>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 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간이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안내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
		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생략)	2.(현행과 동일)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또는 간이투자
	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	<u>설명서상</u>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
		다.
		4.~8.(현행과 동일)
	4.~8. (생략)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
	9.<신설>	<u>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u>
		<u>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u>
제1부. 5. 투자운용인		<u>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력	T4) 01	T4) 01 57141101 000 7150041
	주1) 이 투자회사의 운용은 퀀트운용팀이	주1) 이 투자회사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회사의 투자전	퀀트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
	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	력"은 이 투자회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
	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니다.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
		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회사의 투 자목적 및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
		지속적 및문용인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월 구 있는 사진에 내한 분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주3) (생략)	<u> </u>
제1부. 6. 투자실적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추이(연도별 수익률)		<u>ㄱㅇㄹ 기止으포 ㅂ네씨드</u>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Class S 신설

	T	1
		주1) 후취판매수수료는 Class S 주식에 한하
		여 주식을 환매하는 시점에 부과되며 상기
		의 후취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별
		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u>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u>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
		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주2) 정관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
		- 하지 아니하며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
		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
		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타비용 등 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Class S 신설
	 주1)~주3) (생략)	- - 주1)~주3) (현행과 동일)
	· · · · · · · · · · · · · · · · · · ·	-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
	· / · · · · · · · · · · · · · · · · ·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이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	C 보기 세계에 되기 마이터 전에 합기하기 야 하는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
	어디 보장반에 명의 이상이 가지고 된 생할 수 있습니다.	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6일 구 ᆻ밥이다.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집
		합투자업자가 부담)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
	~ C ~ ~ ~ / / / / / / / / / / / / / / /	생할 수 있습니다.
	주5)~주7) (생략)	주5)~주7) (현행과 동일)
제2부. 1. 보수 및 수		
수료 	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	
	시(누적)]	시(누적)]
		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Class S 신설
제3부. 요약재무정보		<u>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I.	

< 정 오 표 (3)>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차근차근수익쌓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4.02.21
- 3. 주요 정정사항 :
 - S클래스(펀드온라인코리아 판매 전용 클래스) 신설

[규 약]

lπ ¥J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조(투자신탁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
의 명칭 및 종	는 다음 각호와 같다.	는 다음 각호와 같다.
류)	1~7. (생략)	1~7.(현행과 동일)
	8. <신설>	8. Class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
		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제10조(수익증권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 발행 및 예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
탁)	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	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
	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	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
	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7. (생략)	1~7.(현행과 동일)
	8. <신설>	8. <u>Class S 수익증권</u>
제39조(보수)	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
	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
	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한다.
	1~7. (생략)	1~7.(현행과 동일)
	8. <신설>	<u>8. Class S 수익증권</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3
		<u>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u>
		<u>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u>
		0.15
제40조(판매수수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동일)
료)	③<신설>	③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u>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u>
		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	2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	
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	_
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있다.	工
	οı
④ <신설> <u>④ 제3항의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u>	
<u> </u>	_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	
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	<u>객</u>
<u>으로 한다.</u>	
1. 종류S 수익증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	<u>객</u>
의 100분의 0.15 이내	
⑤ 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제2항 각 호 ⑤ 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제4항의	<u>후</u>
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u>취판매수수료는</u> 제2항 <u>및 제4항</u> 각 호의 범	위
있다.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환매수수 ① (생략) ① (현행과 동일)	
료) ② 종류A, 종류A-e, 종류C, 종류C-e, 종류W, ② 종류A, 종류A-e, 종류C, 종류C-e, 종류V	N,
종류F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종류F, <u>종류S</u>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는 원본	자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	한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	라
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	2
한다. 부과한다.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2.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③ (생략) ③ (현행과 동일)	
제50조(공시 및 ⑥ 신탁업자는 법 제90조제2항 각호의 어느 ⑥ 신탁업자는 법 제90조제2항 각호의 어.	<u> </u>
보고서 등)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게
법 제248조에 따른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 법 제248조에 따른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모
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 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	케
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 각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8. (생략)	1.~8. (현행과 동일)
안내	9.<신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
		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

		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2부. 5. 운용전문인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력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2부. 6. 집합투자기	<신설>	- S클래스 가입자격
구의 구조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
11. 매입, 환매, 전환		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절차 및 기준가격 적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
용기준		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u>과되는 수익증권</u>
관한 사항		- S클래스 수수료 및 보수
		· <u>후취 판매수수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u>
		<u>액의 0.15% 이내</u>
		· <u>환매수수료:</u>
		<u>-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u>
		-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
		의 30%
		· <u>보수: 운용(0.4), 판매(0.33), 신탁(0.025),</u>
		사무관리(0.015)
제2부. 13. 보수 및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에 관한 사항		<u>Class S 신설</u>
	주1) (생략)	주1)(현행과 동일)
		주2) 후취판매수수료는 Class S 수익증권에
		한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부과되
		며 상기의 후취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
		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u>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u>
		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
		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
		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u>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u>
		<u>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u>
		<u>다.</u>
		주3) 집합투자규약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
		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
		며 집합투자규약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
		<u>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u>
		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
		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TO BUT MATE AT X NO	다. 접접구시기구에 구피되는 모두 꽃 비용 Class S 신설
제3부. 집합투자기구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의 재무 및 운용실적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	라. 운용자산규모	라. 운용자산규모
자에 관한 사항		<u>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간이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8. (생략)	1.~8.(현행과 동일)
안내	9.<신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
		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
		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1부. 5. 투자운용인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력		
제1부. 6. 투자실적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추이(연도별 수익률)		
제2부. 1. 보수 및 수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료		<u>Class S 신설</u>
	주1) (생략)	주1)(현행과 동일)
		<u>주2) 후취판매수수료는 Class S 수익증권에</u>
		한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부과되
		며 상기의 후취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
		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
		<u>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u>
		<u>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u>
		<u>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u>
		<u>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u>
		<u>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u>
		<u>다.</u>
		주3) 집합투자규약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
		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
		며 집합투자규약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
		<u>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u>
		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
		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Class S 신설</u>
제2부. 1. 보수 및 수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
수료	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	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
	시(누적)]	시(누적)]
		<u>Class S 신설</u>